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06

발의연월일 : 2021. 1. 19.

발 의 자: 강훈식 · 이광재 · 송갑석

허 영·장철민·강병원

김윤덕 • 양기대 • 박재호

이장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념 규정 및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뉴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역여건 반영과 지역특성을 살려 지자체가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함.

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도 발전계획 수립에 지역균형

뉴딜과제를 추가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지역균형뉴딜의 심의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행정·재정지원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역여건 반영 과 지역특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 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3(지역균형뉴딜의 선정·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뉴딜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시·도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의 심의·선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1항의 지원 신청 자료를 송부한다.
 - ③ 지역균형뉴딜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균형뉴딜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지역균형뉴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지역균형뉴딜 사업 과제를 심의·선정한다.
- 1. 전략의 타당성, 지역경제혁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 2.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효과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 3.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등
- ⑤ 제4항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지역균형뉴딜분과위원회 심의·선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 국비 지원 대상 지역균형뉴딜을 최종 선정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균형뉴딜을 사업 소 관부처, 기획재정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 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그 밖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3.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
	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
	고, 지역여건 반영과 지역특
	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
	<u>한다.</u>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2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2의2.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
	항
3. ~ 16. (생략)	3. ~ 1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②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 4. ~ 10. (생략)
- ③ ~ ⑤ (생 략)
- ② ~ ④ (생 략)
-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 항
- 4. ~ 10.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의3(지역균형뉴딜의 선정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뉴딜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시 •도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 고,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가 신청한 사업의 심의・선정 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에 제1항의 지원 신청 자료를 송부한다.
 - ③ 지역균형뉴딜을 심의・선정 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균 형뉴딜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지역균형뉴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지역균형뉴딜 사 업 과제를 심의·선정한다.

- 1. 전략의 타당성, 지역경제혁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등
- 2.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효과 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 3.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등
- ⑤ 제4항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4 항에 따른 지역균형뉴딜분과위 원회 심의・선정 결과를 행정 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 의하여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 국비 지원 대상 지역 균형뉴딜을 최종 선정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균형뉴딜을 사업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해 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원할수 있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그 밖에 지역균형뉴딜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